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322

발의연월일: 2023. 2. 27.

발 의 자:전재수·김영배·양기대

김경만 · 김태년 · 강득구

박재호 · 최인호 · 송기헌

이병훈 · 김상희 · 이탄희

김정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자, 옷,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 헌법재판소도 해당 규정에 대하여 '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시물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없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'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(2017헌가4).

참고로, 영국의 경우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

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만을 두고 있는데,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볼 때 일정 금액 범위 이내에서 유권자들이어깨띠 등 일상적인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이에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68조제1항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1항 중 "후보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"을 "누구든지"로, "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(上衣)·표찰(標札)·수기(手旗)·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"을 "윗옷(上衣)·표찰(標札)·수기(手旗)·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(이하"어깨띠등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이 경우 어깨띠등의 규격이나 금액[후보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는 금액에 한한다]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.

제25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6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

어깨띠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

아

정

혅 행 제68조(어깨띠 등 소품) ① 후보 제68조(어깨띠 등 소품) ① 누구 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.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 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 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 · 성명 · 기호 및 소속 정 당명,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 旗)・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. <후단 신 설>
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,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

(上衣)・ 丑 찰(標札)・ 수기(手旗) · 마스코트, 그 밖의 소품(이하 "어깨띠등"이라 한다)----------. 이 경우 어깨띠등 의 규격이나 금액[후보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후보 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는 금 액에 한한다]이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벗 어나서는 아니 된다. <삭 제>

모자나 옷, 표찰·수기·마스코 트·소품, 그 밖의 표시물을 사 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 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.

第255條(不正選擧運動罪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(어 깨띠의 규격을 말한다)을 위 반하여 어깨띠, 모자나 옷, 표찰・수기・마스코트・소품,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
- 6. ~ 20. (생략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.
-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삭 제>

第255條(不正選擧運動罪) ①
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6. ~ 20. (현행과 같음)
②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68조제1항 후단을 위반
하여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

	벗어난 어깨띠등을 사용하여
	선거운동을 한 사람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